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325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칠성,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임규호, 홍국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재정지원의 적용 범위나 친환경 차량 보급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차량 도입 지연 및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환승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수입 변동에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근거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 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전기버스 등 친환경 마을버스의 보급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일부 사업자가 노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등 보급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아울러, 경사도 높거나 폭이 좁은 도로 등 특수한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시 승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정기 교육이 필요함.
- 이에, 행정지원 절차의 신속화 및 운송수입 변동 반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운행 매뉴얼 마련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의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등 행정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0항 신설).
- 다. 시장은 환승제도로 인한 마을버스 운송수입 변동을 고려하여, 기준 운송원가 산정 시 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1항 신설).
- 라.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 확보 및 대피 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7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의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등 행정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차량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⑪ 시장은 환승제도로 인한 마을버스 운송수입 변동을 고려하여, 기준 운송원가 산정 시 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③ (생략) <u><신 설></u></p> | <p>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u></p> |
| <p>제10조(시장의 책무) ① ~ ⑨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 <p>제10조(시장의 책무)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마을버스의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등 행정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차량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⑪ 시장은 환승제도로 인한 마을버스 운송수입 변동을 고려하여,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u></p> |
| <p>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⑤ (생략) <u><신 설></u></p> | <p>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u></p> |

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항 | 추계대상 여부 | 판단 내용 |
|--------------------|---------|---|
| 제4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제4항 | X | [내부 절차]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내부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 제10조(시장의 책무)제10항 | X | [내부 절차] 환경친화적 마을버스 지원사업의 내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 제10조(시장의 책무)제11항 | △ | [추계 곤란] 환승제도에 기인한 마을버스 운송수입 감소분을 추가 산정할 경우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사항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로선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 제17조(안전운행 방안)제6항 | X | [기시행 중인 사업] 소관부서(교통실 버스정책과)에서 기시행 중 ¹⁾ 인 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10조(시장의 책무)제11항은 환승제도로 인한 마을버스 운송수입 감소시 기준운송원가비 산정²⁾과정에서 금액 증가를 초래하여 추가 지원 비용³⁾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 검토결과 환승제도와 마을버스 운송수입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합과 서울시간 의견 차이가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지속 중이므로 현시점에서는 객관적인 비용 추정이 곤란함

1) 2025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버스정책과-30796, '25. 7. 31.) ※ 상세내용(불임)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기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2.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3. 차량보험료
4. 차량감가상각비
5. 차고지비
6. 정비비
7. 그 밖의 비용
8. 적정이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항목

3)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실제 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이 설 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붙임] '2025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중 관련 내용 일부 발췌

| | | | | | |
|------|--------------|-----|--------|--------|--------------|
| 문서번호 | 버스정책과-30796 | 시 민 | | | |
| 결재일자 | 2025. 7. 31. | 주무관 | 버스정책팀장 | 버스정책과장 | 교통기획관 |
| 공개여부 | 부분공개(5) | 김동운 | 代강성복 | 이지영 | 07/31 김태영 |
| 방침번호 | | 협 조 | | | |

2025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2025. 7.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추진 방향 〉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모바일 동영상(VOD)교육방식 도입**을 통해 교육편의성 제고 및 종사자의 교육 참여로 인한 배차 공백 최소화
-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교육 강조로 **사고 없는 버스** 만들기
- **대시민 친절교육의 강화**를 통해 버스서비스 만족도 제고
- **교육별 인증시험과 전수 점검**을 통해 **교육 내실화**

□ **신규채용 교육**

- 주 관 : 서울시 교통연수원 (시내, 마을, 전세·특수, 공항)
- 교육대상 : 취업회사에 사전교육비 수납하고 교육의뢰서 및 사후교육 접수증을 발급받은 자
- 교육시간/방법 : 최초 1회 16시간 (총2일, 1일당 8시간) / 대면 교육
- 교육 프로그램

| 순서 | 프로그램 | |
|----|---------------------------------|-------|
| 1 | 응급조치 실습 (심폐소생술) | 0.5시간 |
| 2 | BMS, GPS 교통카드 시스템 이해와 단말기 운용 요령 | 2시간 |
| 3 | 안전 운행 및 교통법규 관련교육 | 2시간 |
| 4 |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운행 및 정류소 정차질서 확립 | 1시간 |
| 5 | 대형 승합자동차의 안전관리와 화재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6 | 행복한 소통, 감동주는 고객응대 기법 | 1.5시간 |
| 7 | 교통약자 인권교육 | 1시간 |
| 8 | 버스운행 현장체험사례 교육 | 2시간 |
| 9 | 성인지 감수성 역량 강화 교육 | 1시간 |
| 10 | 인문학 교육 | 2시간 |
| 11 | 교육인증시험 : 합격 기준 80점 이상 | 1시간 |

○ **강조사항**

- 응급조치(심폐소생술, 화재예방) 및 카드단말기 운용 교육은 실습위주 운영
- 토론 실습 등 문제해결·참여형 교육 확대로 교육몰입도 향상 및 교육효과 제고
- 개인별·그룹별 발표와 실습에 대한 피드백·코칭 제공

□ 보수교육

- 주 관 : 사업조합(시내), 교통연수원(마을, 전세·특수), 공항버스 협의회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교육방법 : 대면(시내, 전세·특수), 대면 및 VOD(마을) ※ 공항버스 자체 실시
 - ▶ '25년부터 교육참여편의를 위한 모바일동영상(VOD) 교육방식 시범도입
 - ▶ 단, 응급처치, 화재대응 교육은 전년도 방식(대면 혹은 ZOOM교육) 유지
- 교육대상 : 약 18,000명 중 면제자를 제외한 인원

|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 |
|---------------------------------------|-------------|
| ◆ 무사고·무벌점이 10년 이상일 경우 | → 교육 면제 |
| ◆ 무사고·무벌점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 | → 격년으로 교육이수 |
| - 해당년도가 홀수년도(홀수 생년 → 이수 / 짝수 생년 → 면제) | |
| - 해당년도가 짝수년도(짝수 생년 → 이수 / 홀수 생년 → 면제) | |
| ◆ 무사고·무벌점이 5년 미만일 경우 | → 매년 교육 이수 |

○ 교육프로그램

| 순서 | 시내버스(대면) | |
|----|--|-----|
| 1 | 회사 자체 자율 교육 | 40분 |
| 2 | 대시민(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 50분 |
| 3 | 감정노동 관리와 대처(신규) | 30분 |
| 4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전기버스 포함), 교통법규 관련 교육 | 50분 |
| 6 | 응급조치 기본 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및 소화기 작동법교육 | 50분 |
| 7 | 교육인증시험 | 20분 |
| 순서 | 전세·특수여객(대면) | |
| 1 | 중앙버스 전용차로 안전운행 | 1시간 |
| 2 | 응급조치 기본교육(심폐소생술) | 1시간 |
| 3 |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해설(장거리 운행 위주) | 2시간 |
| 순서 | 마을버스(대면, ZOOM 및 VOD) | |
| 1 | 대시민 친절응대 교육(교통약자 인권교육 포함) *VOD | 1시간 |
| 2 | 안전 운행(전기버스 포함) 및 교통법규 해설 *VOD | 1시간 |
| 3 | 교육인증시험 *대면, ZOOM, VOD | 1시간 |
| 별도 | 응급조치 기본 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및 소화기 작동법교육 *대면, ZOOM | 1시간 |

※ 버스 운수종사자 직무 특성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화재대응 등 실시간 교육이 필요한 내용은 기존방식을 유지하고, VOD교육은 교육 실효성 평가에 따라 지속 여부 검토할 예정임.